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주)서울지점 정보기술(IT)부문 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에 및 「금융IT보호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공시 사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보호부문인력비율, 정보보호예산비율 미충족 및 모범규준상 금융ISAC 연계시기 미충족

2.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정보보호인력비율	정보보호예산비율
총임직원수의 5%이상 (1명)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이상 (1명)	정보기술부문예산의 7%이상 (1800만원/7% 126만원)

3.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공시일 현재기준)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정보보호인력비율	정보보호 예산비율
충족	미충족	미충족
100%	0%	2.2%

4.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가.정보보호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

당사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전업 재보험 지점으로서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 정보보호인력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나, 정보보호 인력을 충원할 예정.

나.정보보호 예산 비율의 미충족 사유

당사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전업 재보험 지점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향후 사정에 따라 예산이 증가될 수 있음.

5.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전업 재보험 지점으로서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이용자에게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임.

6.금융ISAC(공동보안시스템)연계여부

현재 연계여부 및 연계 예정일

현재 연계하고 있지 않음.

미연계 사유

당사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전업 재보험 지점으로서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연계하고 있지 않음.

본 공시화면은 2013년5월31일까지 제공하며 공시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본 홈페이지의 수시공시 란에서 공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3.04.30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주)서울지점 대표이사 시미즈 사토시